KOSHA GUIDE C - 11 - 2012

가설계단의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 지침

2012. 8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한국안전학회 이근석
- 제·개정 경과
 - 2011년 6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 - 2012년 7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- 관련 법규·고시·규격 및 자료
 - 1.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~30조(제1편 총칙 제3장 통로)
 - 2. 노동부고시, 제2009-38호(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)
 - 3. KOSHA GUIDE G-85-2012(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설치에 관한 기술지침)
 - 4. KOSHA GUIDE M-80-2011(기계 및 설비의 통로설치에 관한 기술지침)
 - 5. 가설공사 표준시방서(한국건설가설협회, 2006)
 - 6. 건설공사 가시설물 안전점검 편람(한국건설기술연구원, 1995)
 - 7. 건축기술지침(대한건축학회, 2006)
 - 8. KS: 작업발판, KS F 8012: 2009
 - 9. BS: temporary works-equipment (BS EN 12811-1: 2003)
 part 1: scaffolds-performance requirements & general design
 - 10. BS: safety of machinery permanent means of access to machinery (BS EN 14122-3: 2001)

part 3: stairways, stepladders and guard-rails

- 11. OHSA: 1926.1052 stairways
- 12. OHSA: 1910.24 fixed industrial stairs
- 13. OHSA 3124-12R 2003, A guide to OHSA rules- stairways & ladders
- 14. OHSA office of training & education. May 1996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2년 8월 27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가설계단의 설치 및 사용 안전보건작업 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1 편(총칙) 제3장(통로) 제21조~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가설계단의 설치, 사용 및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안전보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높이가 다른 두 지점 간을 통행하기 위하여 가설계단을 설치할 때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계단(Stairways)"이라 함은 30°부터 60°까지의 경사각을 갖는 통로로서 수평부재는 판 모양이나 평면 발판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.
 - (나) "발판(Tread)"이라 함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위해 한 발씩 내딛는 수평부 재의 판 모양이나 평면 발판을 말한다.
 - (다) "발판 폭(Width of Tread)"이라 함은 발판이 가로로 놓여있는 길이를 말한다.
 - (라) "발판 너비(Depth of Tread)"라 함은 발판의 전면부에서 후면부까지의 길이를 말한다.
 - (마) "발판 높이(Rise)"라 함은 계단에 부착된 발판에서 위 발판과 아래 발판 사이의 수직 거리를 말한다.
 - (바) "계단참(Landing)"이라 함은 계단의 끝부분에 위치한 수평면의 정지 지역을 말한다.

KOSHA GUIDE C - 11 - 2012

(2)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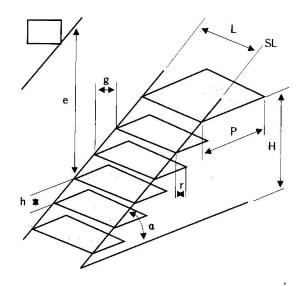
4. 이동통로 선정기준

경사각에 따른 이동통로의 선정은 통상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, 작업장 특성에 따라 약간의 조정은 가능하다.

- (1) 경사로는 경사각 30° 이내에서 설치하며, 경사각이 15°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.
- (2) 계단은 경사각 30°에서 60°까지의 구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사다리는 경사각 60°에서 90°까지 구간에서 설치하며, 이동식 사다리의 기울기는 75°이하로 하여야 한다.

5. 가설계단의 설치기준

가설계단의 구조는 <그림. 1>와 같으며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.



<그림. 1>가설계단의 구조

SL : 경사선 H : 계단 높이 L : 발판 폭 P : 계단참 g : 발판 너비

h : 발판 높이

r : 겹침

e: 발판위 머리공간

a : 경사각

KOSHA GUIDE C - 11 - 2012

(1) 일반요건

(가) 가설계단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"KS F 8012 작업발판"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,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한 이상의 기계적성질을 가진 것으로 사용하고, 주위 환경에 의해 발생되는 부식에 대해 저항성이 있어야 한다.

재 질	구성 부분	재질 규정
강 재	지지대	KS D 3566에 규정하는 STK 400 또는
		KS D 3568에 규정하는 SPSR 400
	계단발판 바닥재	KS D 3566에 규정하는 STK 400 또는
		KS D 3601에 규정하는 XS 42
	계단발판 보강재	KS D 3501에 규정하는 SPHC
	걸침고리	KS D 3503에 규정하는 SS 330
알루미늄 합금	지지대, 계단발판	KS D 6759에 규정하는 A 6063S
	걸침고리	KS D 6701에 규정하는 A 5052P 또는
		KS D 6759에 규정하는 A 6063S

- (나) 계단의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.
- (다) 발판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들 때에는 렌치, 기타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.
- (라) 발판은 이동시의 추락, 전도,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.
- (마) 발판 끝부분과 계단참의 표면은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바) 계단 위와 주변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이나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.
- (사) 계단에는 자재나 공구 등을 적재하여서는 안된다.
- (2) 가설계단의 설계요건
- (가) 계단의 설계는 "가설공사표준시방서"에서 정하고 있는 허용응력 설계법을 활용하고, 강재 또는 알루미늄재 등과 같이 비교적 재사용이 많은 부재는 장기허용응력을 적용하여야 한다.

- (나) 계단 및 계단참은 한국산업규격 "KS F 8012 작업발판"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비계에 관한 하중을 적용하여 125kg/m²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(다) 계단 발판 및 지지대의 처짐량 및 휨 하중에 관한 성능은 한국산업규격 "KS F 8012 작업발판"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.

항 목	규 정	
계단 발판의 처짐량(cm)	계단 발판 1.5이내	
지지대의 처짐량(cm)	전체 처짐(지지대 포함) 2.5이하	
지지대의 휨 하중(N)	5,390 이상	

(3) 가설계단의 안전요건

가설계단의 구조에 관한 안전요건은 한국산업규격 "KS F 8012 작업발판 "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통로용 작업계단의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.

- (가) 발판의 폭(L)은 3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- (나) 발판의 너비(g)는 18cm 이상으로 하고, 각각의 너비가 같은 크기이어야 한다.
- (다) 발판의 높이는 24cm 이하 이어야 하고, 동일한 계단에서의 발판 높이는 모두 일정하여야 한다. 단, 이 높이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출발지점 위치에서 첫 번째 발판에 국한하여 그 높이를 줄이거나 늘려야 한다.
- (라) 계단을 설치하려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발판의 폭, 너비 또는 높이를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응용하도록 한다.
 - ① 비계를 설치한 곳에 조립형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고자료에 제시한 영국 규격 "BS EN 12811-1: 2003"을 응용하도록 한다.
 - ② 기계 · 탱크 · 설비의 내·외부 계단이나 마루 · 난간 · 피트에 연결된 고정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고자료에 제시한 미국 규격 "OSHA 1910.24(e)"를 응용하도록 한다.
- (마) 발판의 겹침(r)은 평면상의 발판일 때는 0 이상(r≥0cm)이어야 하며, 판 모양의 발판일 때는 "r≥1cm"이상이 되어야 한다.

C - 11 - 2012

- (바)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.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사) 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각각의 발판으로부터 높이 2m이내의 머리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(아) 최 상부의 발판은 계단참에 접하거나, 상부 발판과 계단참의 격차가 발판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.

6. 안전난간

- (1) 일반요건
 - (가) 안전난간은 추락예방을 위한 장치로써 작업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지역에 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.
 - (나) 높이 1m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
 - (다) 계단과 인접 구조물과의 사이가 20cm이내인 경우와 안전난간과 동등한 구조의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.
 - (라) 계단과 인접 구조물과의 사이가 3cm이상일 때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안전난간

안전난간의 구성요소는 상부 난간대, 중간 난간대, 난간기둥, 발끝막이판 등으로 구성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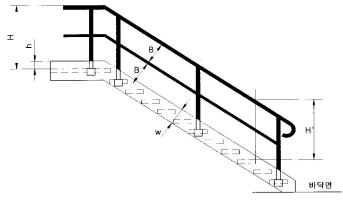
- (가) 계단 발판에서 상부 난간대까지의 높이(H)는 0.9m이상 1.2m이하이어야 한다.
- (나)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발판의 중간지점에 설치하며, 그 공간의 폭 (B)은 60cm 이하이어야 한다.
- (다) 발끝막이판은 난간 바닥의 물체가 낙하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단 바닥면으로부터 10cm이상의 높이(h)를 유지토록 하고, 바닥면과의 틈새 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- (라) 계단 발판의 측면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는 폭 20cm 이상의 측면 보강재(w)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마) 난간기둥 사이의 간격은 2m이내 이어야 하며, 만약 이 간격 이상이 되면 난간기둥을 보강하거나 고정 장치를 설치하여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

H : 난간 높이

h : 발끝막이판 높이 B: 난간사이 공간 폭 w: 보강재 폭



<그림. 2> 안전난간

7. 기성품 가설계단의 응용

(1) 일체형 가설계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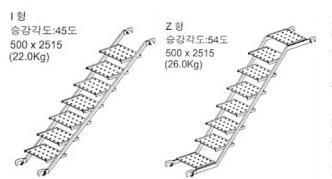
일체형 가설계단은 <그림 3>과 같이 지지대, 계단발판 및 걸침 고리로 구 성되고, 계단의 상단 및 하단에 발판 부착여부에 따라 I형과 Z형으로 구분 한다. 일체형 가설계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용에 지 장이 없어야 한다.

- (가) 지지대는 2본이 있어야 하며, 또한 각각 양 끝단에 걸침 고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.
- (나) 발판 폭은 35cm 이상으로 하고, 또한 그 바닥면은 미끄러짐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
- (다) 발판 너비는 18cm 이상으로 하고, 또한 각각의 너비가 같은 크기이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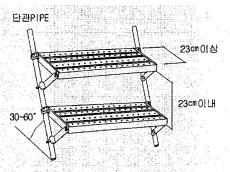
- C 11 2012
 - (라) 발판 높이는 24cm 이하이어야 하고,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 고정된 구조 이어야 한다.
- (2) 조립형 가설계단

조립형 가설계단은 그림 4와 같이 발판을 단관비계의 지지대에 크램프를 사용하여 작업장의 환경에 적합하게 조립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.

- (가) 가설계단의 경사각은 30°~60°를 유지하여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나) 발판 너비는 23cm 이상으로 하고, 또한 그 바닥면은 미끄러짐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.
- (다) 발판 높이는 23cm 이하이어야 하고,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(라) 단관비계와 크램프는 가설기자재 안전인증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.



<그림 3> 일체형 가설계단(I형, Z형)



<그림 4> 조립형 가설계단

8. 가설계단 설치작업 중 안전 준수사항

- (1)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게 작업장소의 상황과 작업순서 등을 가능한 그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지시하여야 하며, 작업 중 예상되는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.
- (2) 근로자는 당해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, 안전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KOSHA GUIDE

C - 11 - 2012

- (3) 작업의 안전한 진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경험 및 숙련여부를 고려하여 작업에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 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.
- (5) 출입금지 장소에는 울타리 · 로프 · 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장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, 필요에 따라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.
- (6) 사용하는 기기 · 공구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작업전에 점검하고 불량공구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정비한 다음에 사용하여야 한다.
- (7) 가설계단의 설치를 완료하면 설치상태를 점검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9. 가설계단의 유지관리

가설계단을 설치 사용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도록 한다.

- (1) 설치 작업 중 점검
- (가)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나) 재료에 녹,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함이 없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다) 발판이 설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2) 사용 및 유지관리 점검
- (가) 발판과 지지대의 접속이나 연결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나) 발판의 변형 부식 또는 손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다) 발판위에 떨어져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라) 계단 주변의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
부록: 참고자료

1. 비계의 조립형 계단 설치기준 (출처 : BS EN 12811-1 : 2003)

*명칭: 1. 발판

2. 계단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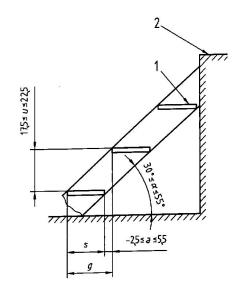
*기준(단위 : cm)

1) 발판높이 : 17.5≤u≤22.5

2) 겹침 : -2.5≤a≤5.5

3) 발판너비

구분	A형	B형
S	$12.5 \le s < 16.5$	16.5≤s
g	$15.0 \le g < 17.5$	17.5≤g



2. 기계 · 탱크 · 설비의 내·외부 계단이나 마루 · 난간 · 피트에 연결된 고정 계단의 설치기준 (출처 : OSHA 1910.24(e) Angle of stairway rise)

경사각	발판 높이(cm)	발판 너비(cm)
30°35'	16.51	27.94
32°08'	17.15	27.31
33°41'	17.78	26.67
35°16'	18.42	26.04
36°52'	19.05	25.40
38°29'	19.69	24.77
40°08'	20.32	24.13
41°44'	20.96	23.50
43°22'	20.59	22.86
45°00'	22.23	22.23
46°38'	22.86	21.59
48°16'	23.50	20.96
49°54'	24.13	20.32